

## 건설업 폐업신고 의한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폐업신고를 수리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에 따라 폐업신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1일

충청북도 영동군수

상호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등록말소업종	등록말소년월일	폐업사유	비고
대보건설(주)	배병열	151311-*****	충북 영동군 학산면 서산로 59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충북영동08-11-01)	'15.1.21.	사업포기	자진반납